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기 게양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4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외국기 계양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4.
3. 회 부 일 : 2024. 8.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육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 갈등을 야기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외국기 게양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개정안은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관련 조문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13조(다른 국가의 국기 게양금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대한민국 국기법」은 ①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¹⁾, ②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③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기간²⁾ ④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및 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등을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

구분	내용
①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②	국가기념일 (현충일, 국군의 날)
③	국가장기간 (전현직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등)
④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⑤	지자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그런데,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 중 3·1절은 국권 회복을 위한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이며,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애도하기 위한 기념일임에도, 최근 3·1절과 현충일에 일장기 또는 육일기를 게양³⁾하여 국민의 공분을 산 사

5. 한글날: 10월 9일

2) 「국가장법」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3) 관련보도 : “삼일절 세종시 아파트 가구에 일장기 내걸려…항의빗발”, 연합뉴스, 2023.3.2.

“‘현충일인데’ 부산 한 아파트 육일기 게양 ...시민들 공분”, 연합뉴스, 2024.6.6.

건이 발생하였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에 현행법상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3·1절과 현충일에 일장기 또는 육일기를 게양한 사건과 같이 부적절한 국기 게양으로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국경일 등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국경일 등의 취지를 훼손하여 국민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⁴⁾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국기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다른 나라의 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규정은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국기게양일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⁵⁾.

4)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 관련 물품을 착용하는 행위’는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음을 고려할 때(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705 결정), 국경일에 특정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도 비록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응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특히, 국기 게양일에 다른 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비록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며, 다른 나라의 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해외 유사 입법례도 찾아볼 수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